

---

#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

---

	보건복지부
	국방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산림청

---

## 1장 총 칙

### 1.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헬기 보유 기관 간 헬기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용어의 정의

- 1) “응급의료헬기”란 응급의료종사자가 탑승하여 응급환자를 항공 이송 할 수 있는 각 부처 소관 헬기를 말한다.
- 2) “응급의료 전용헬기(이하 “닥터헬기”)란 응급항공 이송을 전담할 목적으로 내부를 개조하고 응급의료장비 및 부대장비 등을 탑재한 회전익(回轉翼) 항공기로서, 전문의를 포함한 응급의료 종사자가 탑승하여, 현장에서 의료기관에 이송될 때까지 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소관 응급의료헬기를 말한다.
- 3) “헬기 공동활용체계 참여기관”은 응급의료헬기를 보유한 보건복지부, 국방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및 산림청 5개의 상위기관을 말한다.

### 3.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운용사업」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헬기 공동활용체계 참여기관은 응급의료헬기 운영과 관련된 소관 부처 법규 및 규정에 이 지침의 내용이 반영하여야 한다.

## 2장 응급의료헬기 출동체계

### 1. 응급의료헬기 출동시 119에 운항정보 제공

1) 참여기관은 소관 응급의료헬기 출동시 운항정보(출동시간, 출동 위치 등)를 관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알려야 한다.

2)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제공받은 헬기 운항정보를 관내 다른 참여 기관에 신속하게 알려, 동일한 신고접수건에 대해 중복출동하지 않도록 한다.

### 2. 중증환자 발생시 닥터헬기 우선출동

1) 참여기관이 응급의료헬기 출동신고 접수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할 경우 우선적으로 닥터헬기 출동을 요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 중증응급환자(별표1)
- ② 사고지점이 배치병원 반경 70km이내
- ③ 시계비행가능시간(평일 및 휴일 일출 ~ 일몰)

2) 닥터헬기 외에도 신고접수 기관이 상황 상 소관부처 헬기보다 다른 기관 헬기가 출동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참여 기관에 헬기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3) 1,2항에 따라 헬기 출동을 요청받은 기관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동이 어려운 경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를 즉시 알려야 하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신속히 출동 가능한 다른 헬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 3. 응급의료헬기 가동훈련

소방방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긴급구조 훈련과 연계하여 응급의료헬기 보유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훈련 실시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4. 그 밖에 헬기 공동활용에 필요한 사항 논의

참여기관은 그 밖에 헬기 공동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수시로 실무협의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 개최는 안건이 있는 소관 부처에서 주관하고, 참여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부 칙

이 지침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닥터헬기 운용 세부지침(안) 별첨 1

1) 구급차 운행 가능 지역 : 지상이송보다 항공이송이 효과적인 경우

분류	기준
중증외상의 의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상기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 사고(경운기와 트랙터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승자가 사망하였거나, 환자가 차량으로부터 방출</li> <li>· 차량의 50cm 이상, 객실의 30cm 이상의 함몰</li> <li>· 차량의 전복</li> </ul> </li> <li>- 자전거, 오토바이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5km이상의 속도로 추돌, 탑승자의 이탈</li> </ul> </li> <li>- 추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층 이상 또는 산속에서 추락</li> <li>· 흉상 및 관통상</li> <li>· 열차, 선박, 항공기 사고</li> </ul> </li> </ul> </li> <li>○ 환자의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통, 구토 또는 변형을 동반한 두부 외상</li> <li>- 2개 이상 사지의 변형 및 절단</li> <li>- 체강이 개방된 손상 또는 개방성 골절</li> </ul> </li> <li>○ 활력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식저하(V이하) 또는 관찰 중 지속되는 의식 저하</li> <li>- 촉진되지 않거나 약한 맥박, 알거나 없는 호흡</li> <li>- 쇼크의 징후(저혈압 또는 빈맥 또는 빈호흡)</li> <li>- 사지 중 1개 이상의 마비</li> <li>- 대퇴골, 골반, 척추 및 다발성 늑골골절의 의심</li> </ul> </li> <li>○ 입부의 외상</li> <li>○ 낙뢰, 감전 및 중증화상(화염과 연기에 노출)</li> </ul>
심근경색의 의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갑자기 발생한 흉통 또는 심계항진</li> <li>○ 과거력 상 고혈압 또는 당뇨병 있는 환자의 흉통 또는 심계항진</li> <li>○ 저혈압 또는 호흡곤란</li> </ul>
뇌졸중의 의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갑자기 발생한 사지 중 1개 이상의 마비</li> <li>○ 갑자기 발생한 사지 중 1개 이상의 감각마비</li> <li>○ 갑자기 발생한 외안근, 안면근 및 설근의 마비</li> <li>○ 갑자기 발생한 의식저하</li> <li>○ 갑자기 발생한 심한 두통</li> </ul>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명의 위협 또는 사지 손실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용 항공기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li> </ul>

2) 구급차 운행 불가능 지역 : 항공이송 외에 신속한 이송 수단이 없는 경우, 구급차 운행 가능지역의 출동요청기준과 더불어 적용

분류	기준
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혈되지 않는 외부 출혈</li> <li>○ 사고상</li> <li>○ 벌, 해파리 등에 의한 쇼크</li> </ul>
중증응급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련지속상태(status epilepticus)</li> <li>○ 급성 호흡 곤란</li> <li>○ 심정지</li> <li>○ 감압증</li> <li>○ 복부의 압통을 동반한 급성 복증</li> <li>○ 소화관의 출혈</li> <li>○ 농약,독극물 중독</li> <li>○ 익수</li> <li>○ 갑자기 생긴 호흡곤란</li> <li>○ 분만의 징후가 있는 산모</li> <li>○ 신생아</li> </ul>